

펌뱅크서비스 계약서(원화)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은행"이라 함)과 _____ (이하 "이용기관"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펌뱅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장 기본사항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은행"이 "이용기관"에게 펌뱅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계좌번호의 지정)

- ① "이용기관"은 "은행"이 펌뱅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이 사용할 서비스 종류 및 예금계좌는 본 계약과 별도로 "은행"이 제공하는 "원화펌뱅크서비스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에 따라 지정합니다.
- ② "이용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은행"에게 "신청서"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이 전산등록을 마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3조 (수수료 등)

"은행"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요청한 의뢰건수 또는 "은행"이 실제로 처리한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월중 발생한 수수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별도 청구 없이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은행"이 "이용기관"의 "수수료 인출 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체 출금하기로 합니다.
3.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 계약 효력상실일에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용기관"의 "수수료 인출 계좌"에서 출금하고 부족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청구합니다.
4. 수수료가 연체된 경우 서비스가 정지되며,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은행"은 "이용기관"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은행"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이용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용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14일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동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합니다.
6. 집금인번호전송계좌에 고객이 "은행"의 창구, ATM(CD)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은행"의 내국환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제 2 장 (대량 또는 실시간) 수납이체

제 4조 (대량수납이체 업무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이용기관"의 고객(이하 "납부자"라 한다)으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수납대금을 "은행"에 개설된 "납부자"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용기관"이 "신청서"에 신청한 "계좌번호"(이하 "모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는 자동계좌이체 업무로 합니다.

제 5조 (실시간수납이체 업무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수납대금을 "은행"에 개설된 "납부자" 계좌에서 즉시 인출하여 "이용기관"의 "모계좌"에 즉시 입금하는 자동계좌이체 업무로 합니다.

제 6조(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의 접수 등)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의 접수, 신청내용의 전산등록 및 자동계좌이체 신청명세 전송 등의 업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은행"은 "이용기관"이 "이용기관"의 고객(이하 "납부자")으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은행"에 자동계좌이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동계좌이체 신청 직접접수 이용기관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반드시 자동계좌이체 약관 동의가 포함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포함)으로 징구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이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직접 접수 가능한 경우에는 녹취 등(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금 동의 방법)의 방법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단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와 예금주의 명의를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용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하고 이를 보관하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의 원본 및 제 거래내역은 "납부자"가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은행" 또는 "납부자"가 자동계좌이체 동의에 관한 내용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은행"은 "이용기관"로부터 접수한 자동계좌이체 신청내역에 대한 동의여부를 "납부자"에게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은 필요시 신청서 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5. "이용기관"이 직접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가.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접수받는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는 사전에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 "납부자" 또는 제 3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로 본인의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과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징구)을 첨부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합니다.
 - 다. "납부자"가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 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계좌이체 신청으로 처리하며, 나 목에 준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라. "이용기관"은 "계좌이동서비스"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직접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기관코드, 납부자번호, 계좌번호가 기록된 자동계좌 이체 신청서에 한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납부자명세전송 건당 수수료를 "신청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은행" 또는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신규,해지,변경 포함)를 접수처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 가. "은행" 또는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접수처리 한 후 익일(은행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은행"의 영업시간까지 사전 약속된 출금계좌번호, 납부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등의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전송하기로 합니다. 단, 실시간 수납이체 이용기관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나. "은행"과 "이용기관"은 제 1호에 따라 전송받은 데이터를 즉시 전산등록하고 처리결과를 당일 정해진 시각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 다.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자동계좌이체 신청명세 중 정상처리명세 및 전산등록 불능명세(계좌번호 오류 등)를 정해진 시각까지 "이용기관"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 신청등록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라. "은행"과 "이용기관"은 데이터의 전송 및 전송결과를 수신하는 쪽에서 확인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 마. "은행" 또는 "이용기관"이 처리한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 접수처리 업무 및 자동계좌이체 처리 불능민원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은 "이용기관"의 대고객 민원 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 7조 (자동계좌이체 의뢰)

- ① "이용기관"은 별도로 정한 전산처리절차에 따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를 정해진 시각까지 "은행"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수신 완료된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서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동계좌이체 의뢰로 간주하며, 동 명세서는 "은행"의 동의 없이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8조 (자동계좌이체 처리)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동계좌이체의 처리는 다음 절차에 의합니다.

1. "은행"은 "이용기관"로부터 전송받은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에 의거 "이용기관"의 이체지정일(실시간 수납이체의 경우 이체 의뢰 즉시)에 출금대상계좌의 지급가능잔액 범위내에서 인출하여 "이용기관"의 모계좌에 이체하고, 별도로 그 처리결과와 자동이체 미등록, 잔액부족 등의 처리불능명세를 전송하기로 합니다.
2.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가 자동이체 미등록,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도 "신청서"에 따라 대량수납이체 또는 실시간수납이체 의뢰건당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니다.
3.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출금일자, 출금회수, 출금금액 등 자동계좌이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은 "이용기관"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9조 (자동계좌이체 변경, 해지)

- ① "은행"이 자동계좌이체 등록원장 정리차원에서 자동계좌이체 등록 자료를 "이용기관"에게 전송하여 자동계좌이체 계속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이용기관"은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납부자" 또는 제3자가 "이용기관"에게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하고 "은행"에게 해지 요청한 경우에는 "은행"은 자동계좌이체 등록 여부를 확인,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지 신청 처리하고 해지한 사실을 "이용기관"에게 전송 또는 유선 통지하기로 하며, "이용기관"은 납부자명세전송 건당 수수료를 "신청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제 2항에 따라 해지 등록한 계좌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자동계좌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④ "은행" 또는 "이용기관"은 최종인출요청일로부터 1년간 출금 요청이 없는 자동계좌이체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이용기관"은 "은행"에 자동계좌이체의 해지를 요청하고, "은행"은 해당 건을 해지합니다.



2. “은행”은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계좌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단, 금융결제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내역은 해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모계좌의 인출)

“이용기관”은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입금일 익영업일 이후에 인출하기로 합니다.

제 11조 (착오 인출 처리)

- ①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착오(타인계좌 또는 전산오류 등)로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체 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은 착오 인출 내용을 “이용기관”에게 유선 통지하며 “이용기관”은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착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 상당액을 당일 중으로 출금 계좌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이용기관”의 처리가 지연되어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임의로 “모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 금액을 즉시 인출하여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용기관”에게 유선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직접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받은 계좌에서 착오 인출 사고가 연 3회(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은행”은 “이용기관”의 자동계좌이체 신청 접수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④ “이용기관”은 “은행”이 제 ③ 항의 착오 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6조에 의거 “이용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고지의무)

- ① “이용기관”은 “납부자”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동계좌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또는 확인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금 동의 방법” 중 서면 외의 방법으로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자동계좌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또는 확인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기관”은 납기일 또는 납부자번호 등 납부자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기관”은 “납부자”가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이용기관”이 “납부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이용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대량 또는 실시간) 지급이체 및 급여이체

제 13조 (대량지급이체 업무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이용기관”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급금을 이체하는 업무로 합니다.

제 14조 (대량급여이체 업무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은행” 또는 타행에 개설된 “이용기관”의 임직원 계좌로의 급여이체 업무로 합니다.

제 15조 (실시간 지급이체 업무 및 실시간 급여이체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이용기관”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급금(임직원 계좌로의 급여이체 포함)의 실시간 계좌이체업무로 합니다.

제 16조 (대량 또는 실시간 지급이체 업무처리의 기본요건)

- ① “은행”은 “은행”의 본지점은 물론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 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의 계좌이체를 실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용기관”에게 전송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지급이체를 의뢰할 수 있는 이체대상 계좌의 종류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 공동망을 통하여 이체할 수 있는 계좌에 한합니다.

제 17조 (이체명세의 통지)

- ① “이용기관”은 별도로 정한 전산처리절차에 따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이체대상명세를 정해진 시각까지 “은행”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제 ①항에 의하여 수신한 이체명세를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이체의뢰로 인정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18조 (이체업무의 처리)

- ① “이용기관”은 이체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지정일 전영업일의 “은행” 영업시간까지(실시간 지급이체의 경우 이체의뢰 시까지)까지 현금으로 “지급모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체지정일에 제17조의 이체명세 내용대로 “지급모계좌”의 지급가능잔액 범위내에서 예금 청구서 및 통장 없이 출금하여 지정계좌로 이체합니다.
- ③ “지급모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이체의뢰금액 합계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④ 실시간 지급이체의 경우에는 “지급모계좌”에 입금된 미추심 자기앞수표 또는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으로 입금된 타점권은 지급가능잔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⑤ 미추심 자기앞수표로 “지급모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 출금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반환 되었을 때에는 “이용기관”은 지체 없이 부도반환 당일중 동 부도금액을 재입금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대량 또는 실시간) 거래명세전송/실시간 잔액명세전송 및 수취인조회 업무

제 19조 (대량 거래명세전송 업무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 또는 기타 은행상품에 대한 거래내역을 거래발생 익일에 일괄 전송하는 업무로 합니다.

제 20조 (실시간 거래명세전송 및 실시간 잔액명세전송 업무의 범위)

- ① “은행”이 제공하는 실시간 거래명세전송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 또는 기타 은행상품에 대한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제공하는 실시간 잔액명세전송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보유한 예금계좌 또는 기타 은행상품에 대한 특정일의 잔액명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로 합니다. 단, 잔액명세전송은 “이용기관”의 요청시에만 제공하며, 명세전송은 요청시점의 단순잔액 명세통보 업무로 합니다.

제 21조 (수취인 조회 업무의 범위)

“은행”은 “이용기관”이 예금주의 실명과 계좌번호로 계좌의 존재유무 내역 등의 정보내역 요청이 왔을 때,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제 5 장 집금이체

제 22조 (업무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별도로 신청한 “이용기관” 명의의 계좌(이하 “자계좌”라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을 “이용기관”의 “모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로 합니다.

제 23조 (입금업무처리)

- ① “은행”은 “이용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이용기관” 또는 제 3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이용기관”의 “자계좌”에 입금처리하고 그 거래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이용기관”에게 전송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을 경우 “은행”의 영업종료시간 현재 “이용기관”의 “자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익영업일에 “모계좌”로 일괄이체하며, “이용기관”은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입금 당일 중에는 인출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이 제 ②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기관”의 “자계좌”에 “은행”의 수납점이 지급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타점권으로 예입된 자금이 있을 때에는 그 타점권의 추심결제가 끝난 후에 “모계좌”로 이체하기로 합니다.
- ④ “은행”이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반환되었을 때는 동 부도대전을 “이용기관”의 “자계좌” 또는 “모계좌”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며, 잔액부족시 “이용기관”은 지체 없이 당일중 부족금액을 “모계좌” 또는 “자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도반환된 타점권 실물은 “이용기관” 또는 입금의뢰인에게 반환합니다.

제 6 장 (대량 또는 실시간) 결제성 상품 중심업체내역 전송 업무

제 24조 (용어의 정의)

- ① “결제성 상품”이라 함은 “이용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일괄구매자금대출, 역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e-안심팩토링, 일반구매론, 역구매론, 무보증구매론 등 “은행”이 별도의 계약으로 제공하는 기업간 결제 상품을 말합니다.



- ② “중심업체”라 함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일괄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e-안심팩토링, 일반구매론, 무보증구매론의 구매기업 또는 역구매자금대출, 역구매론의 판매기업을 말합니다.
- ③ “승인명세”라 함은 “이용기관”이 “중심업체”로서 “은행”에게 제공하는 구매내역 명세 또는 판매대금 명세를 말합니다.
- ④ “약정명세”라 함은 “은행”이 “이용기관”에게 “이용기관”의 협력업체 약정정보 및 대출실행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를 말합니다.

제 26조 (실시간 결제성 상품 중심업체내역 전송업무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중심업체”로서 “은행”에게 전송하는 “승인명세”에 대해 “은행”이 실시간으로 실행하는 업무로 합니다.

제 27조 (대량 또는 실시간 결제성 상품 중심업체내역 전송업무의 기본요건)

본 계약은 “결제성 상품”계약상 “중심업체”의 “승인명세” 전송 또는 “약정명세” 전송을 위한 계약으로 “결제성 상품”의 내용 및 필요한 사항은 “은행”과 “이용기관”사이에 기체결된 “결제성 상품” 계약서 및 약정서에 따릅니다.

제 28조 (“승인명세” 또는 “약정명세” 통보 및 처리)

- ① “이용기관”은 “은행”에게 “승인명세”를 “은행”과 “이용기관”이 별도로 합의한 시간까지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기관”에게 협력업체의 “약정명세”를 “은행”과 “이용기관”이 별도로 합의한 시간까지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③ “승인명세” 또는 “약정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전송한 “승인명세” 또는 “은행”이 이용기관에게 전송한 “약정명세”의 적정성 여부는 “은행”과 “이용기관”이 체결한 개별 “결제성 상품”의 계약서에 따릅니다.
- ⑤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승인명세”가 정상일 경우 지체없이 “이용기관”이 전송한 “승인명세”에 요청한 대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⑥ “은행”은 “이용기관”의 “승인명세”에 대한 실행결과를 “이용기관”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제 7 장 (대량 또는 실시간) 결제성 상품 판매기업내역 전송 업무

제 29조 (대량 결제성 상품 판매기업내역 전송 업무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은행”과 계약한 “결제성 상품”의 판매기업으로서 해당 “결제성 상품”의 “중심업체”가 “은행”에게 “은행”의 영업점 또는 기업뱅킹, CMS, 펌뱅킹 등 전자금융 채널을 통하여 “이용기관” 앞으로 전송한 “승인명세”에 대한 내역을 일괄 전송하는 업무로 합니다.

제 30조 (실시간 결제성 상품 판매기업내역 전송 업무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은행”과 계약 및 약정한 “결제성 상품”의 판매기업으로서 해당 “결제성 상품”의 “중심업체”가 “은행”에게 “은행”의 영업점 또는 기업뱅킹, CMS, 펌뱅킹 등 전자금융 채널을 통하여 “이용기관” 앞으로 전송한 “승인명세”에 대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로 합니다.

제 8 장 예금의 신규 및 해지

제 31조 (업무의 처리)

- ① “이용기관”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예금의 신규개설을 의뢰할 때에는 “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신규개설 의뢰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은행”에게 전송합니다.
- ② 제 ①항에 의하여 수신한 신규개설 의뢰명세가 쌍방이 따로 정한 데이터의 송. 수신 절차에 부합되게 수신되었을 경우 “은행”은 이를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예금의 신규개설 의뢰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예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그 처리결과를 즉시 “이용기관”에게 전송합니다.
- ③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장, 중서, 예금청구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 없이 신규개설 의뢰 금액을 “출금계좌”로부터 인출하기로 합니다.
- ④ “은행”은 제 ②항에 의해 신규 개설된 예금을 만기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장, 중서, 해지신청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금해지 신청절차 없이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를 “이용기관”의 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이용기관”에게 전송합니다.
- ⑤ 제 ①항의 예금 신규개설 의뢰시간은 “은행”의 영업시간내로 합니다.



제 32조 (변경, 수정, 취소)

“이용기관”은 “은행”이 제 31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신규개설 의뢰명세를 변경,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 9 장 관세 납부

제 33조 (업무의 범위)

“관세납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기관”이 납부해야 할 관세의 미납명세 조회
2. “이용기관”이 납부 요청하는 관세의 납부
3. “이용기관”이 납부한 관세의 납부명세 조회

제 34조 (업무의 처리)

- ① “이용기관”과 “은행”은 사전에 지정된 통신망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8조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기관”의 전산입력 장치를 조작하여 입력하기로 하며, “은행”은 이 입력내용을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관세납부 의뢰로 간주하여,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인출 가능한 범위내의 관세납부자금을 인출하고 관세납부 즉시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기관”이 관세를 신청하여 “은행”이 처리한 관세 납부에 대하여 납부 금액의 과소, 과다, 착오납부로 인한 관세납부 불능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기관”과 세관간에 직접 수기로 조정 처리합니다.
- ④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장, 중서, 인출청구서, 수표 등에 의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 없이 “이용기관”이 요청한 관세납부 의뢰금액을 지급계좌로부터 인출하며, 지급계좌에 입금된 미추심 자기앞수표 금액은 지급가능 잔액에 포함합니다.
- ⑤ 제④ 항에 의하여 출금된 미추심 자기앞수표가 부도반환 되었을 때에 “은행”은 동 부도대전을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인출하여 정리하며, 잔액부족 시 은행이 이 사실을 통보하면 “이용기관”은 부도 반환일의 “은행”의 영업종료 시간까지 부족금액을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⑥ “이용기관”이 제⑤항의 부도반환일 영업시간까지 부도금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기관”을 대리하여 “이용기관”의 타 예금계좌에서 동 금액을 인출하여 부도로 인한 부족액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 35조 (변경, 수정, 취소)

“이용기관”은 “은행”이 제 34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관세납부를 변경,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 10 장 공통 사항

제 36조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의 관련내규 및 거래 약관에 따르기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 ① 서비스“모계좌”, 수수료 인출 계좌 또는 대상계좌가 없거나 해지 혹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있을 때
- ② 서비스“모계좌”, 수수료 인출 계좌 또는 대상계좌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 및 기타의 사유로 그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 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으로 기준일자 예금잔액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제 37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은행”과 “이용기관”은 이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처리결과와 확인사항중 “은행”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이체 결과의 조회 및 처리 결과의 전송내용은 금융결제원과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처리결과와 전송내용과 실제 처리 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이용기관”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제 38조 (전산운용)

- ① 본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DATA의 송수신절차, 방법, 시간 등의 전산운용 세부사항은 “은행”과 “이용기관”의 전산실무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이용기관”은 PASSWORD 및 AUTHORIZATION CODE, 대량지급이체에 사용되는 복기부호 등 본 업무수행을 위한 안전 장치를 “이용기관”의 책임 하에 관리합니다.

제 39조 (기밀유지)

“은행”과 “이용기관”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이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40조 (면책)

본 계약내용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과 “이용기관”은 그 책임을 면합니다.

제 41조 (손해배상)

“은행”과 “이용기관”은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 42조 (협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3조 (준용사항)

- ① 펌뱅킹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관련내규 및 수신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제 4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만료일은 계약 당해년도 12월31일로 정합니다.

제 45조 (변경)

“은행”과 “이용기관”은 쌍방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46조 (종료 및 연장)

- 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만료 도래사실을 “이용기관”에게 통지합니다.
- ③ 제②항의 통지에는 “이용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니다.
- ④ “이용기관”이 제②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

제 47조 (관할법원)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48조 (특약사항)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용기관”]

(인)

(법인인감)

